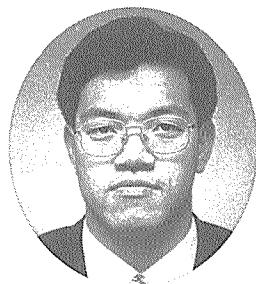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상호 인정약정(MRA) 동향 및 대응전략

김화영
정통부 기술기준과



I. 들어가는 말

최근 국제적으로 WTO 출범과 더불어 통신시장이 단일화·개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질서 및 통신시장은 동일한 무역환경 속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간의 국제경쟁력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이의 한 방면으로 무역 관세장벽이 걷히고 새로이 기술장벽을 없애기 위한 논의가 APEC을 비롯하여 EU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간 형식승인 상호인정이 그것이다.

국가간 형식승인 상호인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리라 예상된다.

이에 여기서는 형식승인 상호 인정이란 무엇이고, 현재의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MRA가 우리나라

라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응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APEC 및 EU와의 MRA 논의 상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MRA)의 의의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안전, 보건, 환경,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에 대한 시험 평가를 양국간에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정”을 말한다.

이는 양국간에 체결된 시험평가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s), 인증서(Certificates), 마크(Marks)를 상호인정하고 이중적인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III. 상호인정약정의 단계

현재 APEC 및 EU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호인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정시험기관 및 시험성적서(Test Report) 상호인정단계

이 단계는 양국간의 기술규정에 의하여 상대국 내의 시험기관을 상호인정하고, 지정된 시험기관은 상대국의 통신관련 기술규정(기준)에 적합하게 통신기를 시험하게 된다. 시험평가기관의 시험결과를 상대국의 인증기관에 보내면 이 인증기관에서 검토후 승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97년 1월 10일 우리나라와 카나다간에 체결된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MRA)의 경우를 보면 양국간에 시험기관

을 각국의 지정조건에 맞게 상호 지정하고, 그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각국의 기술규정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를 우리나라의 전파연 구소 또는 카나다 형식승인 기관 인 산업부에 보내면 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서를 발행받는 절차를 갖게 된다.

일종의 우리나라의 지정시험 기관이 카나다에 하나 더 있다고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정시험기관 및 형식승 인서를 상호인정 단계

이는 첫 번째 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한 단계로서 각국이 상대 국이 지정한 시험기관을 상호지 정하고, 그 시험기관을 통하여 시험한 결과를 자국의 시험기관에서 인증서를 발부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로인해 각국의 제조업체 또는 수출(입) 관련업체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수출(입) 절차가 그만큼 간소화 되는 것이다.

IV. 국제적인 동향

1. APEC 동향

'98.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18개 APEC 회원국 장관들이 여섯차례의 APEC MRA Task Force Meeting을 거쳐

마련한 전기통신기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MRA) 최종(안)을 승인하고 '99. 7. 1부터 MRA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장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승인된 MRA(안)이 APEC의 전기통신기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하는 기본(안)이 되며, 각 회원국은 이 기본(안)을 바탕으로 다자간 또는 양자간에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APEC MRA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며 참여 시기는 '99. 3월 제19차 APEC TEL(전기통신회의, 일본) 회의시까지 통보하면 된다.

APEC MRA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단계와 형식승인서 상호인정 단계로 나뉘어진다.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등 10개국을 선정하여 이중 6개국과 1차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이와는 별도로 스위스, 터키 및 중동구 국가들과는 경제통합 차원에서 표준의 조화 및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통일된 단일마크로서 CE마크를 제정하고 안전, 건강, 환경 등에 관련된 제품에는 CE 마크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CE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EU역내에서 제품을 출하·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CE마크는 유럽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상품에 대한 비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기기는 각 회원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파적합성(EMC) 및 전기안전에 관한 분야도 시험항목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시험기관의 운영사항과 관련된 제도는 국제기준인 ISO/IEC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우리나라의 시험 기관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 EU와 각국의 추진현황

EU는 '92. 9월 상호인정협정 예비회담국으로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카나다, 뉴질랜드 등 10개국을 선정하여 이중 6개국과 1차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이와는 별도로 스위스, 터키 및 중동구 국가들과는 경제통합 차원에서 표준의 조화 및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통일된 단일마크로서 CE마크를 제정하고 안전, 건강, 환경 등에 관련된 제품에는 CE 마크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CE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EU역내에서 제품을 출하·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CE마크는 유럽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상품에 대한 비자라고 할 수 있다.

EU와 각국별 MRA 체결 추 진현황을 보면, 미국과는 3년 2개월만에 '97. 6. 13일 통신단말

기기, 전자기적합성(EMC), 전기용품안전 등 6개 분야에서 MRA를 체결하였으며, 각 분야 별로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승인서 상호인정을 위한 이행기간을 18개월 내지 36개월 두기로 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96. 7. 19일에 가서명으로 통신단말기, 전기용품안전, EMC 등 8개 분야(뉴질랜드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는 제외됨)에서 MRA를 체결, 각 분야별 시험성적서, 인증서 및 마크를 상호인정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나다와는 '97. 6. 10일에 통신단말기, EMC, 전기용품안전, 의료기기 등 7개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EU는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MRA체결 후 국내 비준절차 및 공동위 운영방안 등 협정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과는 '94년 11월부터 MRA협상이 진행중이며, 대상품목은 최초 10개 분야에서 Textile Devices를 제외한 전기장비, 통신장비, 기계류 등 9개 분야로서 이중 4개 품목(통신기기, 전기전자, 화학품, 의약품)에 대하여는 기본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한·EU간에는 MRA체결을 위한 협상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통신기기, 전기기계, 기계류 등 9개 분야에서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EU 양측은 MRA체결 양측의 인증제도를 상호이해하기 위하여 '98. 3월에는 서울에서 EU측의 제도 설명이 있었으며 '98. 7월에는 브뤼셀에서 우리나라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3. 기타

양자간 협상으로 우리나라와 카나다 사이에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MRA가 이미 '97년 1월 10일에 체결되어, 상대국의 제도에 의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갖기 위하여 18개월간 신뢰구축기간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98. 7월부터 우리나라의 업체에서는 카나다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에 카나다에 기기 시험을 받기 위하여 직접가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신기기 분야의 지정시험기관 중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가 카나다로부터 유선기기분야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카나다의 KTL Ottawa Inc.가 우리나라로부터 유·무선, EMC분야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업체에서 카나다로 통신기기를 수출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에서 카나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시험받고, 그 시험결과를 카나다의 형식승인기관에 제출

하면 된다.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된다.

V. MRA가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첫째, 약정체결국간의 이중적인 시험평가 절차를 방지하여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의 절감 및 불확실성 제거로 수출 활성화 가능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보통신기기 수출업체의 경우, 시험평가를 받기 위한 제반비용감소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CDMA단말기 등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관련 규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제3국의 기술규격 및 시험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나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에 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97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기 수출입현황을 보면 APEC 역내 수출 174억불, 수입 153억불로 21억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EU와는 수출 52억불, 수입 21억불로 31억불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시험검사, 인증 등 분야의 기술수준향상

시험평가관련 기관, 절차, 기준 등의 국제기준 부합화 노력으로 관련 기술의 능력 및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카나다 등 APEC내의 선진국 및 EU에서는 통신기기 분야에서 제조자/공급자 자기선언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인증분야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표준, 인증 등에 대한 통상압력 완화

형식승인 관련 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시험 평가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으로 표준, 인증 등의 기술장벽에 대한 통상압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VI.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첫째, MRA 관련 제도개선반을 구성·운영

정보통신부는 APEC 및 EU 와의 MRA에 적극 대응하고 형식승인 관련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 및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98년 말까지 유·무선기기의 인증제도 및 관련 지정시험기관제도 그리고 사후관리제도 등 전반적인 사항에 걸쳐 이루어질 계획이다.

둘째, 지정시험기관 관련 제도를 ISO/IEC가이드에 의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기의 지정시험기관 관련 제도는 유·무선기기, 전자파 적합성(EMC)의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이를 지정, 관리하는 제도도 각각의 법

령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어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애로가 발생된다.

이들 규정을 일원화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VII. 맷음말

APEC뿐만아니라 EU회원국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활발하게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상호인정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분야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MRA에 적극 대응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업체들의 MRA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 및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